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2007년 8월 31일 김성은 의원의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 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 거주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함(안 제3조)
-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함 (안 제4조)
-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함 (안 제7조)

III. 검토의견

1.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초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빈곤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으나, 수급자의 탈빈곤 문제 및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2007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

(단위 : 원 / 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35,000원	734,412원	972,866원	1,205,535원	1,405,412원	1,609,630원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잠재적 빈곤층으로써, 생활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정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차상위계층중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과 같이 노력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다방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 노령 등으로 얼마 되지 않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부과세대 중 약 40%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실정으로서('07. 6월분 : 38.4% 체납), 문제는 3개월 이상 체납시 보험급여가 중단되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여 질병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 말 현재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대부분은 금년도에 제정한 것으로서 조례제정 자치단체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 경우도 서대문구('06. 5월), 중구('07. 4월), 송파구('07. 4월), 동대문구('07. 5월), 서초구('07. 6월), 구로구

(’07. 6월), 양천구(’07. 7월), 관악구(’07. 8월) 등 8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타 자치구도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으로써,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구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 등이 일부나마 보험급여 중단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면, 소액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바(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등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또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규정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의견조회결과 시행시기를 2008년 7월 1일로 늦추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주요 검토사항

가. 보험료 지원대상 : 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지역 보험가입자 중 2007년 6월분 기준으로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는 총 3,036 세대이고, 부과총액은 2,131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단위 : 천원)

구 분	계	65세이상	장애인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	모·부자 세대	기 타
세대수	3,036	1,166	245	-	1	28	1,596
보험료	21,317	7,430	1,433	-	2	205	12,247

- 이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로서 만 65세이상 노인거주세대 및 등록 장애인 거주세대는 130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간 소요예산은 1천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 지원대상에 근로능력 없는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으나, 조손세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와 중복이 되고 소년·소녀가정은 수급자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지원대상 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7년 8월 말 현재 60개 자치단체 중 대다수가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세대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조례제정 자치단체 수	월 보험료 5천원 이하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기 타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장애인, 조손가정 등	전 체 세 대	65세이상 노인세대	65세이상, 장애인, 조손가정 등	전 체 세 대	
60	3	1	2	23	19	3	9

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법 :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매월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아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고, 납부마감일 전에 보험료 총액을 공단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현금지급이 아니라 공단에 직접 대납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한 후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원세대에 대해 매월 고지서 대신 납부금액, 지원근거 등을 명시하여 우리 구가 보험료를 미리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문(안내문)을 보내어 중복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第4條 (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第4條 (保健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保健 및 福祉 增進의 責任이 있으며, 이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